



월간 협회소식

— 본지는 지난 한달동안 협회의 주요업무를 요약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

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4동 297-7번지
 TEL:751-6601, FAX:742-7018

협회E-mail은 하루 두 번 이상 열어 보시다.

대구광역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 초청 간담회 개최

우리시회는 지역 건설업계 현안사항 협의와 상호간 협조체제 강화를 위하여 9. 2(화) 11시 제이스호텔에서 『대구광역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건설환경위원회(위원장 차영조) 전원이 참석하여 지역건설업의 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이홍중 협회장과 차영조 건설환경위원장은 대구건설산업이 수년간 공사물량 부족과 극심한 주택부동산경기 침체로 전반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공감하고 서민들의 살림살이와 지역경제에서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조하기로 하였다.

또한 앞으로 시의회와 건설협회간의 간담회를 수시 가져 지역건설의 현안을 파악하는 등으로 지역건설업체의 수주비중 확대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 참석자

우리협회(9명)		건설환경위원회(8명)		
회 장	이 홍 중	위원장	차 영 조	남구 2
감 사	조 중 수	부위원장	김 대 현	수성 2
대의원	도 재 덕	위 원	지 용 성	달서 5
간 사	배 청	위 원	이 경 호	비례대표
간 사	최 호 중	위 원	김 중 환	북구 4
간 사	최 종 해	위 원	전 성 배	달성 1
간 사	구 자 운	위 원	정 해 용	동구 3
간 사	이 기 운	전문위원	정 순 식	시의회
사무처장	채 서 략			

■ 우리사회 건의사항

- SOC 등 신규 공공투자 확대
- 지역 공공공사(특히 공기업공사) 지역업체 참여확대 지원
- 지역 민간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 지원
- 지방 부동산 희생대책 지원

■ 건설환경위원장 답변

- 지역에서 공기업이 발주하는 대형공사에 지역업체들이 거의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지역정서에도 맞지 않는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며
- 이를 조례등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 국회의원을 적극 활용하는 등의 상위법 정비가 필요
- 지방실정이 비슷한 타시도와의 공조등으로 중앙정부와 공기업에 대한 교섭력 확대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자치구 및 교육청 건설공사도급계약 체결시 도시철도채권 매입 제외

앞으로 회원사에서는 구군청과 교육청 및 교육구청과의 계약체결시 도시철도법 제13조에 의한 도시철도채권(도급금액 5/100)을 매입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회원사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체결시 도급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 그 필증을 제출하여 왔으나 국토해양부에서 “도시철도채권 매입 징구에 대한 회신”(광역시도시철도과-660, '08.5.9)을 통하여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2 제15호 가목에 따라 도시철도채권 매입대상인 건설공사는 ‘도시철도채권발행자와 도시철도건설자 및 경영자의 발주뿐만 해당하므로 ‘도시철도채권발행자와 도시철도 건설자 및 경영자’가 아닌 자치구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도시철도채권 매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유권해석함에 따라

우리시회가 8. 14 대구시와 교육청에 구군과 교육구청에 업무처리 지침을 조속히 시달하여 건설공사 계약시 도시철도채권 매입을 요구하지 않도록 건의한 결과 대구시와 교육청에서는 우리사회 건의사항을 해당부서에 시달하여 계약체결시 참고토록 하였다.

조달청 복수예비가격 산정방법 개선

조달청에서는 그동안 조사금액에서 일률적으로 2%를 삭감하여 복수예비가격 산정을 위한 기초금액을 결정하고 있어 우리협회가 복수예비가격 산정방법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08. 4. 2 조달청장 초청 간담회시 우리사회 이홍중 회장 직접 건의)한 결과 반영되어 실질적인 낙찰율 상승을 가져와 연간 약 1,500억원 공사비 증가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 개선내용 》

- 조사금액이 수요기관 예산의 98%보다 낮은 경우
 → 조사금액 그대로를 기준으로 복수예비가격 기초금액 산정
 ※ 다만 공사특성상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조사금액을 조정
- 조사금액이 수요기관 예산의 98%보다 높은 경우
 → 수요기관 예산 및 조사금액의 차액을 고려하여 조사금액의 0%~2% 삭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복수예비가격 기초금액 산정
- 시행일 : '08.11이후 복수예비가격 기초금액 결정시부터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정부방침 발표

지방미분양의 지속적인 증가세와 더불어 상반기 전체 건설투자는 감소세로 전환하고 특히, 지방 중소업체를 중심으로 건설업 체감지표가 계속 악화되고 있으며, 금년중 위축국면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는 지난 8. 21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 건설경기 보완방안

① 세제지원 방침

- 주택건설용 토지 종부세 비과세
 -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는 토지에 대해 종부세 비과세
 - * 취득후 5년 이내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추징
- 미분양 주택 종부세 비과세 기간 확대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기간 연장 (3년 → 5년)
- 시공사가 대물변제로 받은 미분양주택 종부세 비과세
 - 시공사가 주택신축판매업자로부터 미분양주택을 대물변제로 받은 경우에도 5년간* 종부세 비과세 허용
 - * 단,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보유기간은 제외
- 1세대 2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대상 저가주택 범위 확대
 - 지방(비수도권) 道 지역에만 적용되는 3억원(공시가격) 이하 주택에 대한 2주택 중과배제 규정을 지방(비수도권) 광역시까지 확대 적용(현재 지방광역시는 1억원까지만 중과배제)
-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 매입임대주택 사업 세제지원 요건 완화
 - 양도세중과 배제 및 종부세 비과세 요건을 현행 5호 임대에서 1호임대로 완화하고 임대기간도 7년이상으로 완화

② 중소 건설업체의 경영으로 완화 방침

- 건설경기 둔화상황을 고려, 계약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
 - 최저가낙찰제 확대(300→400억원 이상)를 내년으로 연기
 - 단품슬라이딩제 적용 확대('06.12.29이후→이전 발주분 포함)
- 중소 건설업체 입찰참가 및 수주기회 확대
 - 턴키·대안입찰 공사 탈락자에 대한 설계비 보상 현실화
 - 초대형(천억원 이상) 국가공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를 확대(예 : 5 → 10개사 이내)하여 지역업체 참여기회 제고

지역건설업계 애로건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



우리시회는 경북도회와 공동으로 어려운 지역건설업계 현황을 설명하고 애로사항 건의를 위하여 본회·한국건설산업연구원 초청 간담회를 8. 27(수) 개최하였다.

우리시회에서는 회장, 도재덕, 최호중, 전재준, 최운 간사 등이 참석하였으며 ▶ 지방부동산 희생대책 지원 ▶ 재해울 산정 대상업체수 확대 ▶ 하도급심사제도 개선 ▶ 적정공사비 확보방안 강구 ▶ 조달청공사 지역업체 참여확대 추진등을 건의 하였다.

2008년도 하반기 적용 건설업임금 발표

우리협회는 2008. 5월말 기준으로 조사된 「2008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결과를 통계청의 동의를 얻어 2008. 9. 1일자로 발표하였다.

임금발표에 의하면 전반적인 건설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2008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전체 평균임금이 109,330원으로 전반기 대비 3.7%, 전년동기 대비 6.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104개 일반공사직종은 전반기대비 4.2%, 전년동기대비 7.2% 상승한 101,523원이고

구 분(직종수)	2008.9.1	2008.1.1	2007.9.1	전반기 대비	전년동기 대비
전체 직종(145)	109,330	105,424	102,291	3.7%	6.9%
일반공사직종(104)	101,523	97,471	94,679	4.2%	7.2%
- 주요 15개직종	91,925	89,303	87,071	2.9%	5.6%

건설공사에 가장 많이 투입되는 직종인 보통인부, 형틀목공, 철근공은 각각 63,530원, 97,678원, 106,266원으로 전반기 대비 4.9%, 1.0%, 5.4% 상승하였다.

< 주요 15개직종 >

직종명	임금(원)	직종명	임금(원)
건축목공	102,173	콘크리트공	99,880
형틀목공	97,678	배관공	86,717
철근공	106,266	도장공	90,721
비계공	114,640	작업반장	85,203
조적공	91,518	특별인부	81,596
미장공	93,122	보통인부	63,530
방수공	76,896	건설기계운전기사	90,462
타일공	98,480	주요 15개직종 평균	91,925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제도 활용

노동부에서는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건설업내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2008. 7. 1부터 계절적,기후적인 요인으로 작업하지 못한 날에 대한 임금일부를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제도를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다.

■ 계속고용 지원금제도란?

- 건설업을 행하는 자로서 면허·허가·등록을 받은 사업주가
- 하절기(6~8월) 또는 동절기(12~2월)에 공사중지일이 월6일을 초과했으나
- 1개월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건설현장 기능인력을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면서 금품(휴업수당 이상지급)을 지급한 경우
- 월6일을 초과하는 공사중지일 중 기후적인 요인으로 공사가 중지된 것이 인정되는 날에 대하여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2/3(1인당 1일 35,000원 한도) 지원

■ 지원절차는?

- 하절기 또는 동절기에 기후적인 요인으로 작업중단이 예상되는 공사에 대하여 미리 계속고용계획서를 적성하여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계속고용조치 실시 전일까지 신고
- 공사기간, 근로자수 변경시 반드시 사전에 계속고용변경계획 신고
- 계속고용조치를 실시한 날부터 매1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계속고용조치에 대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지원금 신청

■ 문의처 : 대구종합고용지원센터(23667-6008)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들의 자금소요가 집중되는 추석(9.14)을 앞두고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2008.8.18~2008.9.12)하고 있으므로 회원사들은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내(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지급하여 하도급법 위반으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 대금지급 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유형

-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
- 하도급대금을 장기어음(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 초과)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시중은행 등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초과)하는 행위
-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현금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일(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보다 장기의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의 인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상품,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

박경로 고문변호사 법률코너



수성구 범어2동 51-14 금강빌딩 3층
전화 : 053) 752-3100 팩스 : 053) 752-3106

하자보수보증보험과 민법상 구상권에 대하여

1. 사 례

건설회사 甲은 건축주 乙과 발라신축공사에 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회사 丙이 연대보증을 하였으며, 하자보수의무에 대하여는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하자보증보험증서를 발급받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건설회사 甲이 한 발라신축공사에 3억원 상당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건축주 乙은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보험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3억원을 수령하여 갔습니다. 이때 연대 보증한 丙 회사는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민법상 구상권의무를 지는지 여부.

2. 건설공제조합의 보증보험의 성격

건설공제조합에서 담당하는 각종 보증보험의 경우에는 우선 일반 '보증'으로서의 성격도 있으며 한편 '보험'으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보증'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면 당연히 공동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보험'이라는 성격을 강조하게 되면 제3자인 다른 보증인들에게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3. 대법원 판례의 태도

가. 이전의 판례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5089 판결
이행(지급)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주계약상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보험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은 보증보험계약과 주계약에 부종하는 보증계약이 아닌 하자보증보험은 계약의 당사자,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기본적인 법률 규정 등이 상이하여 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자를 주계약상의 보증인과 동일한 지위에 있는 공동보증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상의 보험자와 주계약상의 보증인 사이에는 공동보증인 사이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8조가 당연히 준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최근 전원합의체판결(대법원 08.6.19. 선고 2005다37154 전원합의체 판결)
구 건설공제조합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보증수수료를 받고 그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 또는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증계약은, 무엇보다 채무자의 신용을 보완함으로써 일반적인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 계약의 구조와 목적, 기능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실질은 의연 보증의 성격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 특히 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1조 이하의 규정이 준용된다.
따라서 건설공제조합과 주계약상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채무이행에 관하여 공동보증인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들 중 어느 일방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채무를 소멸하게 하였다면 그들 사이에 구상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민법 제448조에 의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결 어

가. 최근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이행보증이든, 하자보수보증이든 간에 모두 보증인들 간에는 민법상 구상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나.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 연대보증한 건설회사 丙과 건설공제조합은 공동보증인으로서 하자보수비용 3억원에 대하여 각자 1억5천만원 씩 책임을 져야 하므로, 하자보수비용 3억원 전액을 지급한 건설공제조합은 공동보증인 건설회사 丙에게 1억5천만원을 구상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건자재 가격 및 수급동향

2008. 8월말 현재

VAT별도

구분	규격	전월가격	금월가격	수급동향	비고	
철근	보통철근	D10mm	1,046,000	1,046,000	국제철스크랩가 약1%하락 및 수입철근가격의 소폭하락으로 하반기에는 철근가격 인하여지 있음. 그러나 각 제강사의 8월 정기보수에 따른 감산으로 재고량은 거의 바닥 수준임	0 단위:M/T 0 현장도착도
		D13mm	1,036,000	1,036,000		
		D16mm	1,031,000	1,031,000		
	고장력 철근	D10mm	1,041,000	1,041,000		
		D13mm	1,031,000	1,031,000		
		D16mm	1,026,000	1,026,000		
후판	SM490B	1,150,000	1,150,000	가격강세 이어지고 수급도 여전히 어려움	0 단위:개 0 현장도착도	
H형강	100X100X6X8mm	1,210,000	1,210,000	가격동향은 철근과 유사하며 수요감소로 수급사정은 전월보다 양호해짐	0 단위:M/T 0 현장도착도	
	300X300X10X15mm	1,210,000	1,210,000			
	400X400X13X21mm	1,280,000	1,280,000			
시멘트	보통시멘트 40kg	3,300	3,300	가격안정세이며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감소로 수급 원활함	0 단위:포 0 대리점-수 0 요자 직거래	
	백색시멘트 40kg	9,000	9,000			
레미콘	#57(25-240-15)	49,700	49,700		0 단위:m³ 0 현장도착도	
	#467(40-240-15)	48,700	48,700			
시멘트 벽돌	㉔190X90X57mm	45	45	수급사정 원활함	0 단위:개 0 현장도착도	
모래	하천모래	20,000	20,000			
자갈	자연 자갈	#57 25mm	13,000	13,000	하천모래 채취장 감소로 수급에 어려움 있으나 현재 큰 차질은 없음	0 단위:m³ 0 시내도착도
		잡석	12,000	12,000		
	쇄석	#467 40mm	9,000	9,000		
		#57 25mm	13,000	13,000		
목재 (라왕)	각재	1.8~3.6X 9~12X4.5	900	900	유가인상에 따른 해상물류비용 상승으로 가격인상 소지 절음	0 단위:才 0 현장도착도
	판재	1.8~3.6X30 X3~3.6	1,000	1,000		

회 원 현 황

■ 회원수 : 160개사

구분	토건	건축	토목	조경	금월계	전월대비
계	86	61	10	3	160	△1

※ 피합병상실1

■ 등록사항 변경신고 현황

변경사항	회 원 사 명	변 경 전	변 경 후	전화번호
대표자	(주)신명이엔씨	송국평, 김종태	송 국 평	756-1221
대표자	(주)미도종합건설	정 영 일	전재준(흡수합병)	742-8181
대표자	교보건설(주)	이선주, 이성용	이 선 주	986-2557
소계지	인산종합건설(주)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759-2	대구 동구 효목동 61-8	951-9050
대표자	(주)씨앤우방	박명중, 정영재	박 명 중	607-9000
소계지	금석종합건설(주)	대구 중구 대봉동 195-31	대구 남구 대명동 781-8	256-3968

■ 건교부 위탁업무 처리 현황

단위 : 건수

기 간	신규	주기적신고	기재사항변경	양수도(합병)	계
금 월 (2008.08.01~08.31)	2	9	10	1	22
누 계 (2008.01.01~08.31)	29	40	70	2	141



2008 전국 회원명부 배부

2008년도 시공능력평가액과 회원명부동시함을 수록한 「전국회원명부」를 9.8부터 배부하오니 사무처로 나오셔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제7회<건설업 회계/세무실무과정>개설 안내

○ 교육목적 : 건설업 특성에 맞는 회계.세무영역을 확보, 발전시키고 회계/세무 관리자 및 실무자의 자질을 한 단계 고 양함으로써 업무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함

○ 교육일시 : 2008. 9. 23(화) ~ 9. 26(금), 비합숙, 4일간(전일교육)

○ 장 소 : 태평로 건설회관 6층(서울시청 뒤)

○ 교 육 비 : 회원사 1인당 35만원

(고용보험에서 11만원정도 환급지원)

○ 문 의 : 대한건설협회 총무실 교육과장 직통 (02)3485-8223

회 원 동 정

◆ (주)미도종합건설 건설업자간 합병

회원사인 (주)미도종합건설(대표 전재준)은 대내외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주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역시 회원사인 (주)미도와 합병하였다. 건설업자간 합병시 기존 2개법인의 공사실적은 그대로 합산된다.

◆ 화성산업(주) 창업 50주년 기념행사 실시

화성산업(주)은 9월 1일 창업 5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식을 가지고 지역민들의 고마움에 보답하고자 대구시내 8개소에서 주거환경개선, 무료급식봉사 등의 "이웃사랑 나눔 실천" 봉사활동을 하였다.

회 장 동 정



◆ 대구도시공사 창사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참석

• 일시 및 장소 : 2008. 8. 12(화) 15:00 대구 EXCO

• 하 신 일 : 창사기념 축하 및 관계자 격려

◆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 개청식 참석

• 일시 및 장소 : 2008. 8. 13(수) 12:00 인터불고호텔 컨벤션홀

• 하 신 일 : 개청축하 및 주요 참석자와 지역경제 현안 환담

◆ 낙동강자연운하운동본부 관계자 접견

• 일시 및 장소 : 2008. 8. 13(수) 14:00 건설회관 2층 회장실

• 하 신 일 : 낙동강자연운하운동본부 역할과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 청취 및 시민관심 제고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

◆ 지역건설업계 애로건의를 위한 간담회 주재

• 일시 및 장소 : 2008. 8. 27(수) 11:00 자금성

• 하 신 일 : 지역건설업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본회 및 연구원 역할 당부

토요일에는 각종 증명을 인터넷으로 발급 받으십시오